

1. 개정이유

오염을 발생시켜 해역관리청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조치 후 보고의무 부여,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추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7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 방법,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소 자본금 기준 마련, 해양폐기물관리업 교육기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상 용어 등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6조, 제19조의2, 제25조, 제26조, 별지 제12호서식)

- 1) 법 제12조 및 제15조의2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안 제16조, 제19조의2)
- 2) 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안 제25조, 제26조)
- 3) 법 제18조의 준설품질이 준설품질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인 준설품질 활용 신고서 서식의 준설품질을 준설품질등으로 개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나.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절차(안 제23조의2, 별지 제11호의2 서식)

법 제17조의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조항 신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양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 보고 방법 및 이행보고서 행정서식 신설

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 신설(안 제25조제1항, 별표 4, 별지 제13호서식)

법 제19조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2억원) 및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2억원)의 최소 자본금 기준 규정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 추가

라.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안 제29조의2)

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을 해양환경공단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조치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 제목“(준설물질의 활용 신고 등)”을“(준설물질 등의 활용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준설물질을”을 “준설물질 등을”로, “준설물질활용사업”을 “준설물질 등 활용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준설물질”을 각각 “준설물질 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기술능력”을 각각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제1항제2호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을 말한다.

별표 4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본금	2억원(법인, 개인)
-----	-------------

별표 4 제2호 비고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본금이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별표 4 제3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본금	2억원(법인, 개인)
-----	-------------

별표 4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본금이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준설물질의 활용”을 “준설물질 등의 활용”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준설물질”을 “준설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준설물질”을 “준설물질 등”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호 중 “준설물질”을 “준설물질 등”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다목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뒤쪽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뒤쪽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행보고서

제출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이행내용	조치명령 내용(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수거·정화 기간 등)
	이행사항(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등)
	세부 이행내역(장소, 해양폐기물 등의 처리내용, 처리량 등)
	그 밖의 참고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①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해야 한다. 1. ~ 6. (생략) ②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안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 5. (생략) 제19조의2(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①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 근로조건,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	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① <u>시장</u>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u>군수·구청장</u>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①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하고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24조(준설물질의 활용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설물질을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활용하고자 하는 물질을 준설한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준설물질을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조치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4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신고

등) ① ----- 준설물질 등을 -----
----- 준설물질 등 활용사업-----

-----.

② (현행과 같음)

③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설물질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해양배출업

가. · 나. (생략)

다.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 사. (생략)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양폐기물수거업

가. ~ 다. (생략)

라.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④ -----
----- 준설물질 등-----

-----.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신청 등) ① -----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기술인력 -----

라. ~ 사.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술인력 -----

마.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

3.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해양
오염퇴적물정화업

가. ~ 다. (생략)

라.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 사.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

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
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술인력 -----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
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
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
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
등록) ① -----

--. -----

-----.

1. (생략) 2.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한 <u>기술능력</u> 3. ~ 6. (생략) ②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 ----- ----- <u>기술인력</u>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29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법 제21조의2 제1항 전단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을 말한다.</u>
--	--